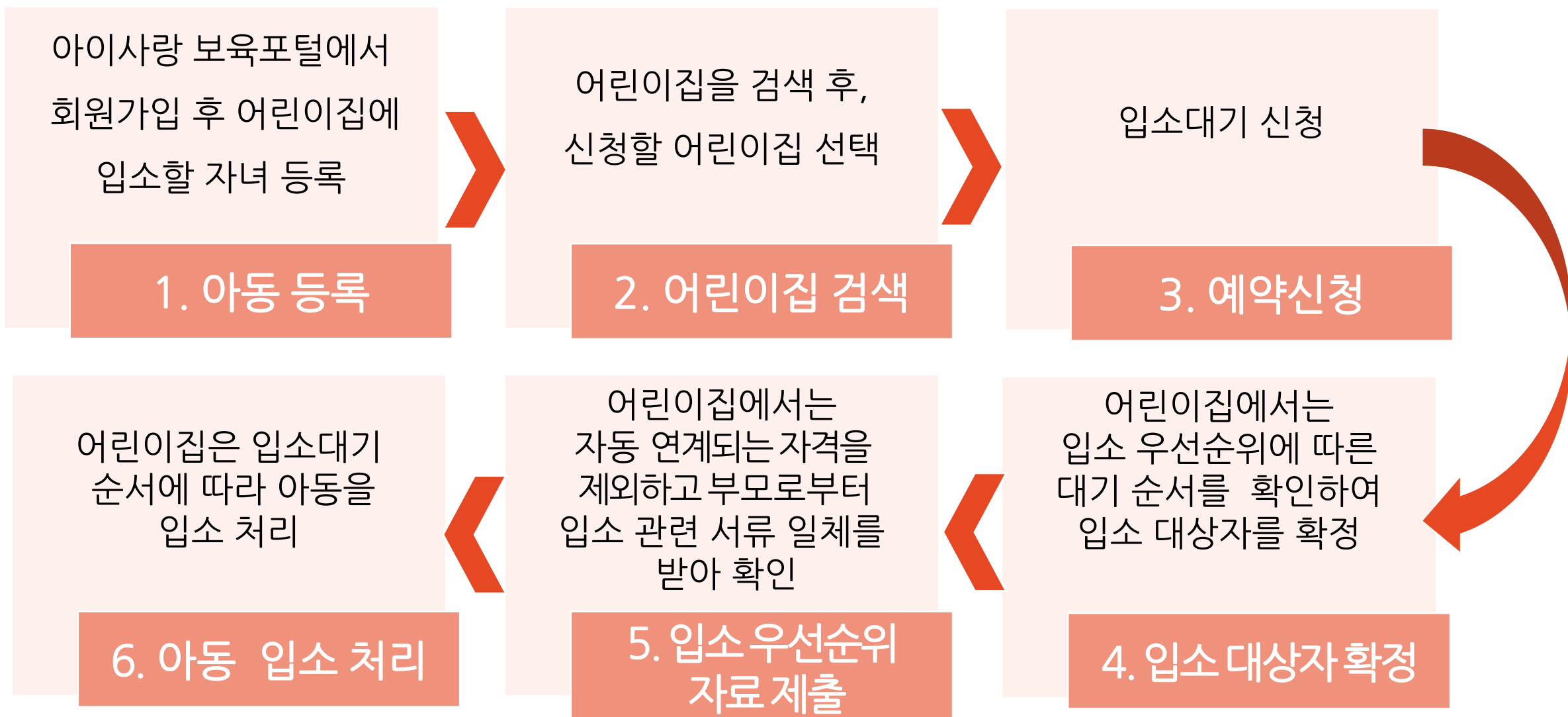


2 보육지원서비스

1) 어린이집 입소 기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절차



The screenshot shows the '입소대기' (Waiting for Admission) page on the 'Aisarang' portal. The page includes a sidebar with navigation links, a main content area with a search form, and a results table. The search form allows users to filter by location, type, and other criteria. The results table displays a list of available spots with columns for location, type, and status.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소대기 시스템 관련 문의 :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232 / 단축번호 1번(유료)

1) 어린이집 입소 기준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기준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 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순위

-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2 보육지원서비스

1) 어린이집 입소 기준

어린이집 입소 시 필수 제출 서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확인 서류] ※ 부와 모 모두 제출

확인 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및 휴학중인 경우 불인정	필수	
예술인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취업 준비자	①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 필수	①② 중 1부 필수
	②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 서류 ※ 구직활동증명서류: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 이수 및 학원 수강증 (출석수업에 한함)	필수	
자영업자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 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소득신고증빙서류, 사업장 매출 장부, 소득증명가능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매출 계약서, 판매 증명서, 기타 소득증명가능서류	중 1부 필수	

1) 어린이집 입소 기준



어린이집 입소 시 필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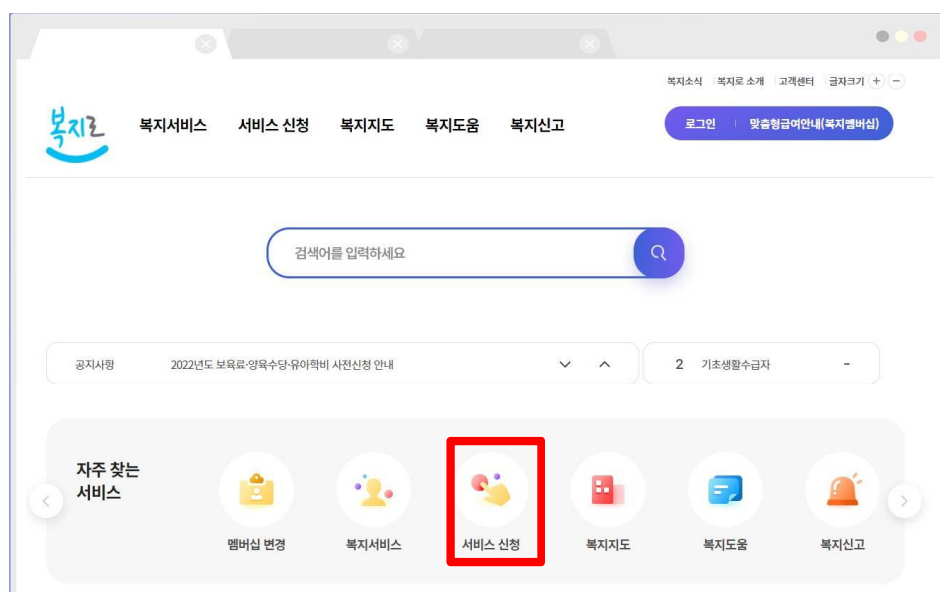
확인 서류		
다자녀가구	- 주인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둘째자녀 이하 임신 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영유아가 2명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해당	중 1부 필수
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확인서류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족	- 주인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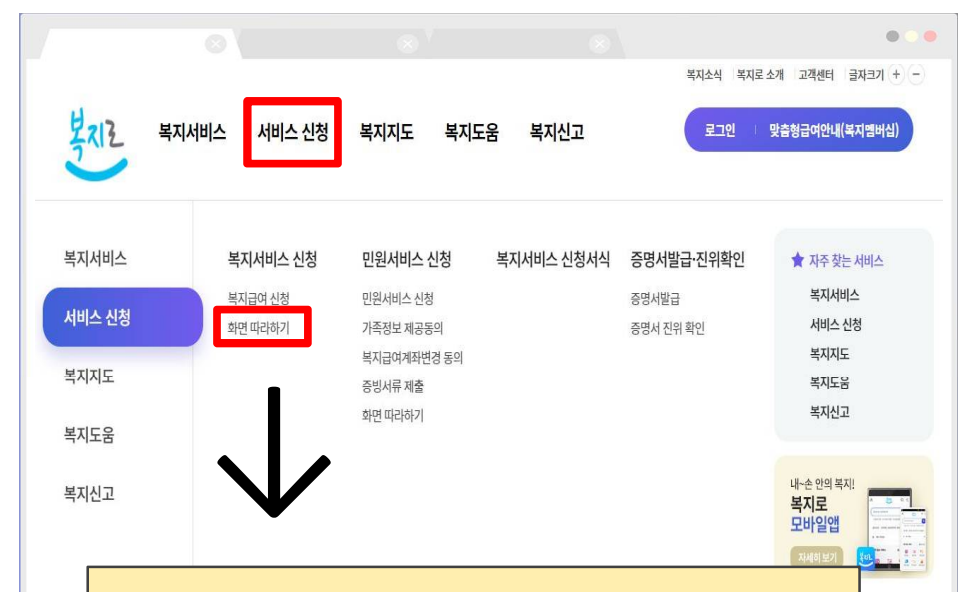
2)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방법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5세 영유아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보육료 지원)
- ※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또는



‘서비스 신청→화면 따라하기’에서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시 필요 서류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시 필요 서류	
방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 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 유예 확인서,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근로)확인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 신청서,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여부
온라인	■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 이용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를 참고

2 보육지원서비스

2)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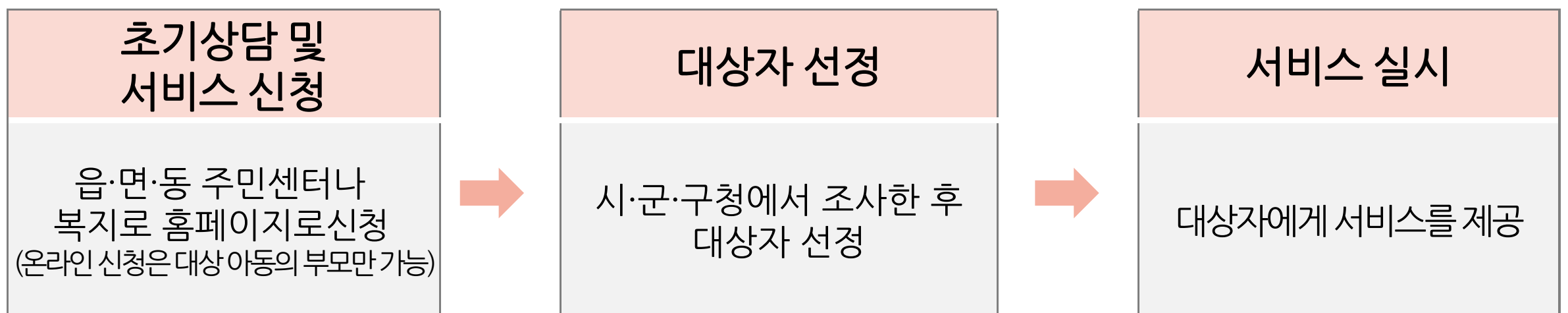
적용시기: 2022. 1. 1. ~

(단위: 천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5세	장애아
기본 보육 시간	정부지원보육료	499천원	439천원	364천원	260천원 ('22.1.1.~2.28.) 280천원 ('22.3.1.~)	532천원
	*기관 보육료	570천원	310천원	210천원	-	622천원
연장 보육료		3천원	2천원	2천원	1천원	3천원

* 기관 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절차



* 지원 방식: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중복 지원 불가능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
-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를 이용할 경우에도 장애아 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2)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기준 체크!



출석 인정 특례

-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 입원의 경우는 퇴원일까지)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제출
-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오전 등원시간 내(9:00 이전)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감염병 유행 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한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 ✓ 경조사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사유별 기준일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간주

- 출석 일수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 일수 6~10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 일수 1~5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2) 보육료 지원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체크!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 변경 필요]

① 연장보육 자격 ⇔ 기본보육 자격 변경		
구분	기본보육자격 → 연장보육자격	연장보육자격 → 기본보육자격
보육료 수급 자격	▪ (기본보육자격) 자격신청일 전일 자격 중지 ▪ (연장보육자격) 자격신청일 당일 자격 생성	▪ (연장보육자격) 자격책정월 말일 자격 중지 ▪ (기본보육자격) 자격책정월 익월 1일 자격 생성

②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구분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수급 자격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급여 지급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2) 보육료 지원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체크!

③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		
변경구분	지 원 내 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보육료 ↓ 양육수당	- 해당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유아학비 ↓ 양육수당	- 해당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2) 보육료 지원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체크!

④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간 변경		
변경구분	지 원 내 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월기준)	
보육료 ↕ 영아종일제	▪ 보육료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 보육료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영아일제 변경월 말일로 한다.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을 보육료 변경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영아종일제 변경월 말일로 한다.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변경월 말일로 한다.

⑤ 양육수당 간 변경		
변경구분	지 원 내 용	
	자격책정일 15일 이내	자격책정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해당월 자격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 (이전 자격 지원불가) ➢ 이전서비스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월 변경 이전서비스 지원 (신규서비스 지원은 익월 1일부터) ➢ 이전서비스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2)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관련 유의사항

- 지원 기간 :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대상
 -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20.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20. 1. 1. 이후 출생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영아수당(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받는 아동
 - ✓ 해외 체류하는 아동
 -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 등원 아동
 -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단, 소급지원 불가)

3)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란?

- 보육료, '유아학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정부의 여러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사용 가능
- ※ 보육료 및 어린이집, 유아학비와 관련된 내용은 복지포털 및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수협, 신한)



어린이집, 유치원+임신·출산 진료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등

3) 국민행복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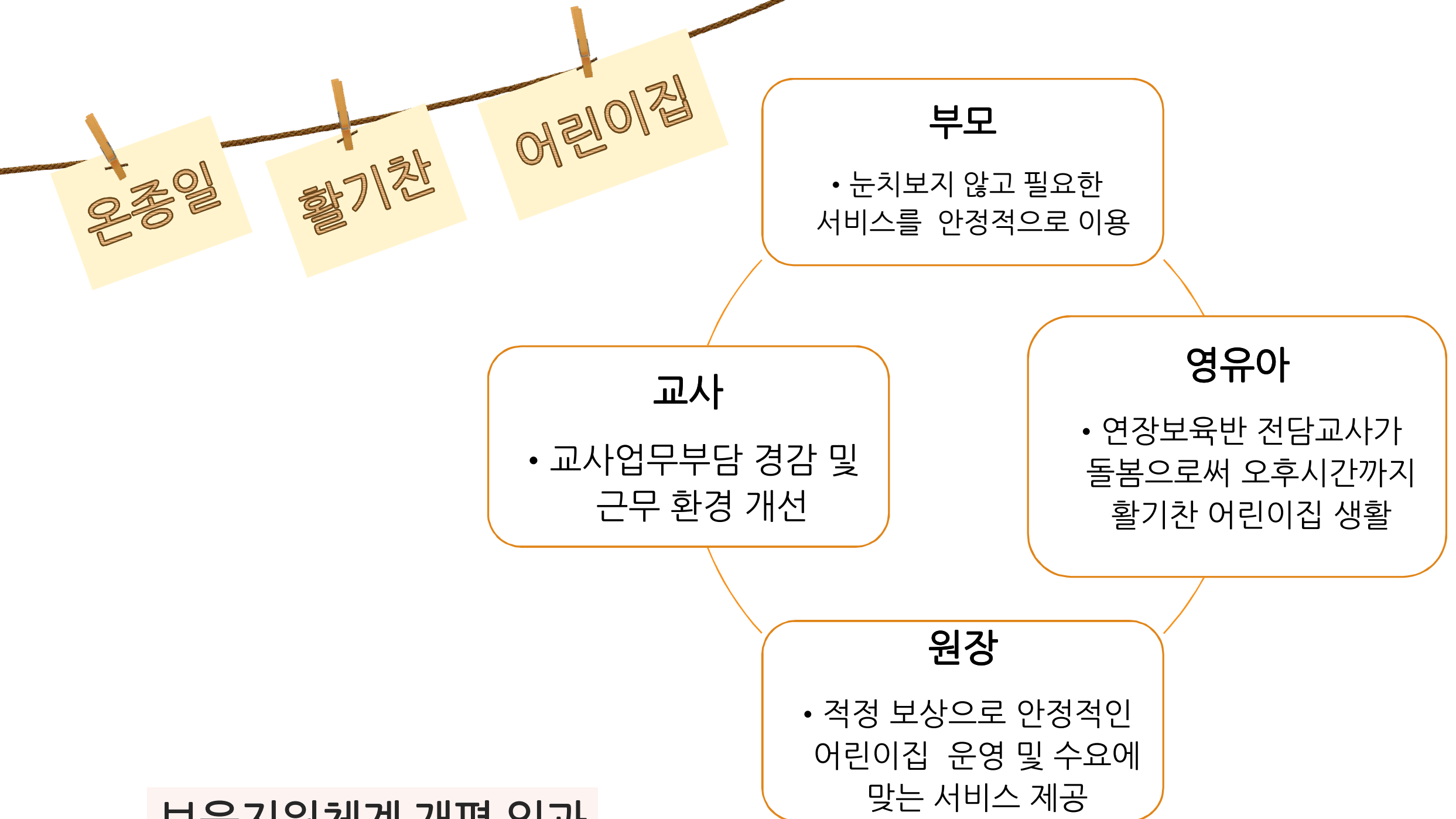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방법

- ☞ 보조금 신청: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이 가능
- ☞ 온라인 보조금 신청서: 복지포털 홈페이지(www.bokjiro.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 오프라인 보조금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2 보육지원서비스

4) 보육지원체계 개편



보육지원체계 개편 일과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① 기본보육 이해하기

기본보육이란?

- 기본보육이란, 어린이집 등원 이후 오후 4시까지의 보육으로, 보육과정 및 이용방법은 이전과 동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 단, 07:30~09:00는 순차적 등원이 가능하며, 통합보육으로 운영

기본보육 운영방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라면 누구든지 기본보육을 이용 가능
- ☞ 종일반·맞춤반이 폐지되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기본보육 대상
- 기존 배치되어 있는 해당 반에서 담임교사가 보육
- ☞ 담임교사의 정기적인 영유아 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 순차적인 등·하원시간을 고려하여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전후로는 통합반 형태로 운영
- 단, 연장보육 신청 아동은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짐

• 기억해 주세요!

- ✓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은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적인 어린이집 생활을 돕습니다.
- ✓ 어린이집 기본보육 이용만으로도 영유아의 교육적인 경험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 하루일과 및 보육과정 운영은 기본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기본보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적 경험과 또래와의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① 기본보육 이해하기

기본보육시간 동안의 일과

- 기본보육시간 동안 영유아들은 표준보육과정 및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놀이와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성장
- 영유아는 놀이, 활동, 일상생활을 통해 성장
 -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따라 놀이, 활동,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생활.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으로 영유아는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식사, 낮잠, 손 씻기, 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건강한 아이로 성장
- 영유아는 정해진 일과를 반복하며 안정감을 느낌
 - 어린이집 하루일과는 ‘등원-오전간식-실내(외)자유놀이-바깥놀이-점심-낮잠 및 휴식
 - 오후 간식-실내(외)자유놀이-하원’ 순으로 이루어지며, 영유아는 정해진 일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낌. 어린이집 일과는 영유아의 연령, 흥미, 건강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보육 이용만으로도 영유아의 교육적 발달과 성장에 충분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② 연장보육 이해하기

연장보육이란?

-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별로 구성된 기본보육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육을 말함

연장보육 이용 대상

-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
- 영유아가 17시 이후에 하원(월 최소 10시간 이상)하는 경우가 많고 연장보육 자격 기준(0~2세)에 충족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
 - * 단, 연장보육 신청 전에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 필요

연장보육 운영 내용

- ✓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으로 이동하여 연장반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짐
- ✓ 연장반은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운영
- ✓ 교사대 아동 비율 ☞ 영아반 1:5, 유아반 1:15
 - * 0세반 아동으로만 반 구성 시 및 장애아 포함 시, 1:3
 - * 영아반 중 0세반 아동 포함 시, 1:3 가능(어린이집 당 1개반에 한함)
 - * 탄력보육 허용으로 최대 영아반 2명, 유아반 5명 내 추가 보육 가능
- ✓ 연장보육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일상생활(휴식 포함) 등의 일과로 진행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② 연장보육 이해하기

연장보육이란?

1. 연장보육 이용 여부 상담(원장 ↔ 부모)

- 어린이집 원장님과 연장보육 이용 여부에 대해 상담

※ 17시 이후 하원이 최소 월 10시간 이상 이용 시 연장보육을 신청해주세요.

※ 연장보육이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헐적·긴급한 필요가 발생 시 연장보육 신청 (구두·유선) 후 이용 가능합니다.

2. 연장보육 자격 신청(0~2세반)

- 연장보육 자격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진행

※ 연장보육 자격 결정 및 통지: 시군구

3. 연장보육 이용 신청(0~5세반)

- 연장보육 이용이 결정되면,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연장보육을 신청

4. 연장보육 이용 최종 확정

연장보육 자격 기준(0~2세반 영아 이용 시 충족 해야함)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구직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1년, 1회 한정),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제출)
가정	다자녀(자녀 2인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건강	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입원/간병
임신·출산	임신, 출산, 유산
학업	재학(원격대학 재학인정), 학위과정(논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한정)
장기부재	군복무, 복역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② 연장보육 이해하기



연장보육 이용 시, 꼭 기억해주세요!



♥ 아이들의 하원 시간을 꼭 지켜 주세요!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 준수는 영유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영유아는 오후 4시, 연장보육 이용 영유아는 오후 7시30분까지 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연장보육 신청 시,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오후 5시 이후 최소한 월 10시간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해 주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연장보육 신청에 따라 ‘연장반’ 편성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합니다. 연장반이 2개월 이상 인원과 이용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용된 교사의 인건비가 중단되므로, 연장보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지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보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후 5시 이후에 귀가할 사유가 생길 경우, 늦어도 당일 오전까지는 담임교사에게 ‘연장보육’을 신청해 주셔야 안정적인 연장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② 연장보육 이해하기



연장보육 이용 시, 꼭 기억해주세요!



♥ 어린이집 하원 후에는 재등원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연장반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하원하고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만 재등원이 가능합니다.

♥ 영유아 어린이집 생활은 담임교사와 상담해 주세요!

연장반 이용시에는, 담임교사가 아닌 연장반 전담교사가 하원지도를 하므로 기본 보육시간 내 궁금한 사항은 '원아 수첩', '스마트 알림장', '전화'를 활용하여 기본 보육반 담임교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보육 시간의 생활은 연장반 교사와 상담

♥ 연장보육시간 하원 시에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함께 귀가 지도를 도와주세요!

(소지품 챙기기, 신발신기 등)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③ 보육지원체계 Q&A



연장보육에 대해 궁금해요 1

보육지원체계



원래 종일반을 이용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종일반 아동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장보육 자격으로 전환되므로 별도 증빙 및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단, 새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자격 여부 상담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장반 이용 시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하나요?

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전액 지원하므로 자부담(별도 결제)은 없습니다.

연장보육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영아(0-2세)반은 취업,구직, 돌봄 필요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아(3-5세)반은 별도 자격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③ 보육지원체계 Q&A



연장보육에 대해 궁금해요 2

보육지원체계



연장보육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0-2세반 영아의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자격 신청을 하고, 시·군·구로부터 자격 결정을 받은 후 어린이집에 이용을 신청합니다.

3~5세반 유아의 경우, 별도의 자격 결정 없이 어린이집에 이용신청합니다.

기본보육을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16시 전에 하원해야 하나요?

16시 하원 시각을 최대한 준수해야 합니다.

연장반을 이용하면 반드시 매일 17시 이후에 하원해야 하나요?

고정적으로 17시 이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③ 보육지원체계 Q&A



연장보육에 대해 궁금해요 3

보육지원체계



연장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간헐적이거나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구
두, 유선 등)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 아동에게 급·간식이 제공되나요?

연장보육 시간에 급식과 간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연장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급·간식을 제공받고자 한다면
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디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자료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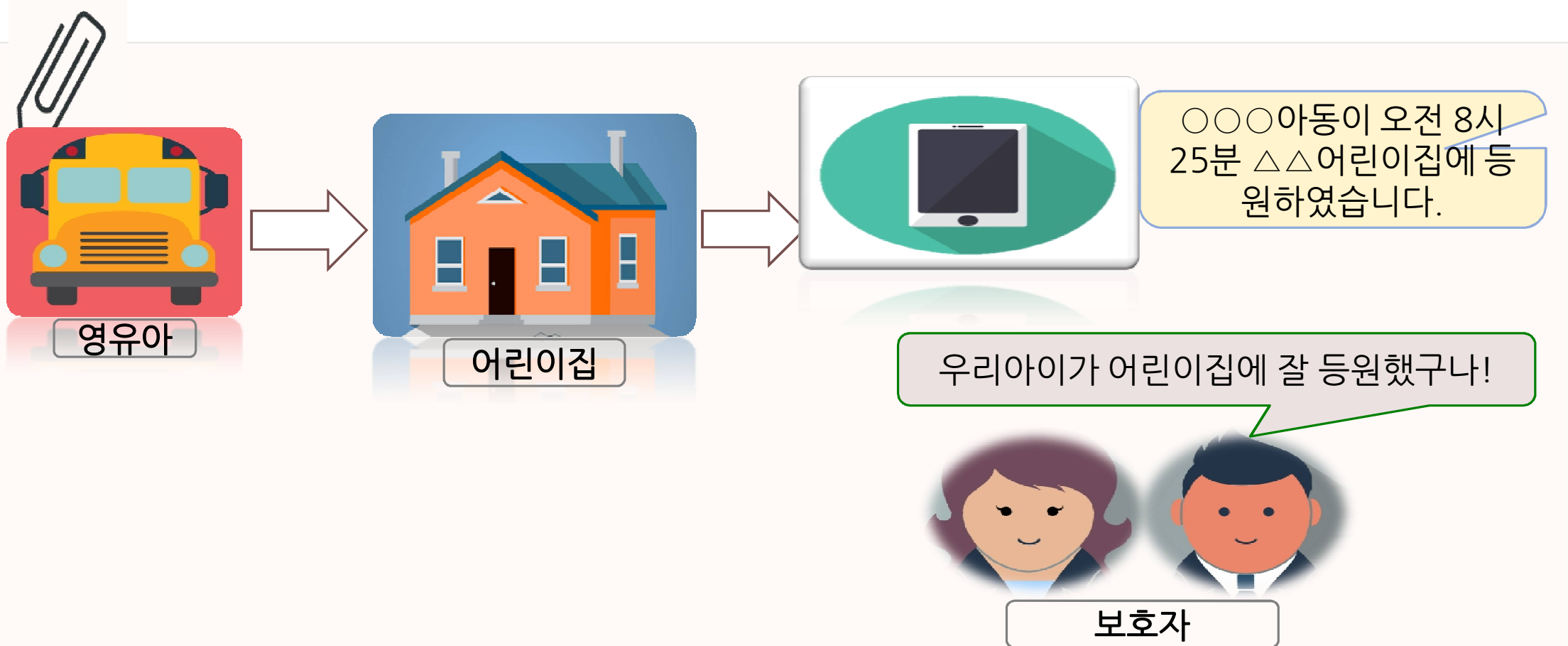
5) 전자출결시스템 안내

전자출결시스템이란?

- 영유아의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영유아 등·하원 시간 안내로 부모님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 ✓ 어린이집은 출석부 서류 관리, 출석일수 확인 및 보육료 신청 등의 행정업무 감소

전자출결시스템 운영방법

- 영유아가 자동 출결을 위한 인식장치(태그 등)를 소지하고 어린이집에 등·하원
- 어린이집에 설치된 등·하원 시각 기록 장치가 이를 감지하고, 서버 전송을 통해 시간이 자동체크
- 영유아 등·하원 시각이 부모님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



※ 영유아가 인식장치를 소지해야 출결이 기록되므로, 꼭 가지고 등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 제 4차 표준보육과정

제 4차 표준보육과정이란?

-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

제 4차 표준보육과정 성격

-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
-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
- 영유아 중심과 놀이중심을 추구
-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
-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

제 4차 보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